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9 - 14 - 071호(사건번호 : 201809조사380)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19. 3. 20.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 지시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유통망에서 불·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8.9.10~11.30)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온라인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조사대상 기간 '18.4.1.~8.31.)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개통일 '18.6.8., 이○○님 아이폰8플러스 판매에 과다지원금 22만원 지급

(증빙 : 지출결의서, 요금수납지원품의서), 개통일 '18.7.13., 김○○님 ○○ 단말기 판매에 과다지원금 25만원 지급(증빙 : 지출결의서, 예금거래내역서)

- 또한, 피심인은 사실조사시 담당 조사관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키로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였다.
- 피심인은 우주폰, 올댓폰, 키다리아저씨, 아성 등과 거래하는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이 제출 요구한 거래처 리스트를 자사판매분과 위탁 판매분을 분리정리해서 '18.9.12.까지 제출하기로 현장조사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단말기 판매 관련으로 거래하는 판매점과의 사후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해당 자료를 최소 3개월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번 조사대상 대리점 중 서원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대리점이 거래 판매점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출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서원모바일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조제5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1호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온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에 따라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한 것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제4항제1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 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제11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각각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일시 보관 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다. 추가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1회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1호를 1회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000원을 적용하여, 각각 건의 금액을 합산한 최종 2,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20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